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사업

자료집



2019. 2. 1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당 지원사업의 내용은 센터의 추가 사업기획 등에 따라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요약

I 행정안전부 지원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함
 - ※ 예비마을기업은 행안부지정 마을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원 정책 대상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주관 : 서울시에서 주관, 공모를 통해 선정, 선정규모는 서울시 범위 내 선정
- 접수시기 :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적 추진 (3~4월경)
 - ※ 예비마을기업의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만 신규마을기업 신청 가능 (11/30). 차년도 신규마을기업 신청(9월~10월)이 가능하도록 선정시기 결정
- 선정과정



- 선정기준 / 방법 :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을 토대로 자치단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 지원규모 : 최대 1천만원(보조금 외 자부담 200만원 이상 부담) 향후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지원자격 :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도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에 보조금 받을 수 있음

□ 1차년도 마을기업(신규)

- 기존 법인이나 새로 시작하는 법인이 마을기업으로서 존속,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 지역 기반 공동체에서 주관하여 설립한 법인이 지역 문제 해결 목적의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경우 누구나 가능
 - ※ 예비설립 전 교육(16시간) 및 행안부 통합교육(8시간) 등 총 24시간의 교육 필수 이수(행안부 통합교육은 마을기업 지정심사 이후 추진)
- 지원규모 : 최대 5천만원 지원 (보조금 외 자부담 1천만원 이상 부담)
- 접수시기 : 2019년 9~10월경 2020년도 사업 공모 예정
- 선정과정



□ 2차년도 마을기업(재지정)

-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 후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보조금 지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 전문교육(4시간) 필수 이수(3월 중 센터 홈페이지 공고 예정)
- 1차년도 성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보조금 외 자부담 6백만원 이상 부담)
- 접수/선정과정



□ 3차년도 마을기업(고도화)

- 우수한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의 '롤모델'로 성장하도록 지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 당년도 전문교육(4시간) 이수시 가점부여(3점)
- 보조금 집행방향 :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 사업 활성화
 - ※ 기업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최소화(20% 범위내)
- 매출, 조합원 구성 변화(사유화 경향 지양), 사회공헌실적 등 종합적 검토
- 지원규모 : 보조금 3천만원(보조금 외 자부담 6백만원 이상 부담)
- 접수/선정과정



II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내용

- 전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7월 중 예정)
- 마을기업인의 날 (10월 중 예정, 장소 추후 안내)
- 신유형 마을기업
 - 사회 이슈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
 - ※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마을기업 발굴 유도
 - 신유형 마을기업 : 정부정책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전파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행안부 주관 매년 1~2개 유형 공모 예정)
 - '19년 신유형 마을기업 시범추진 계획(안)

| |
|---|
| '19년 시범추진 유형 |
| ①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 돌봄, 공동부엌(반찬나눔), 환경정비, 老-老케어 /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 보장(농협 등과 협업 논의 / 3~4개소 선정) |
| ② 도시재생 선도 마을기업 - 도시재생지역을 선도하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국토부와 협의 / 3~4개소 선정) |
 - ※ 시범사업계획은 추후 수립, 2·3차년도 심사와 병행추진 예정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 신규 마을기업 선정시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가능
 - 자치단체는 신규 마을기업 선정시 지역의 현안 해결, 중점 추진정책, 지역의 특색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을 우선 발굴 가능
 - 시도 심사 후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을 구분하여 행안부에 제출,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을 선정하게 된 사유와 추진 전략 등 명시
 - 행안부는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판로 및 컨설팅·교육, 홍보 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우수마을기업

- 우수마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마을기업으로 도약하여 마을기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신청대상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전문교육(4시간) 이수 자율. 당연도 전문교육 이수시 가점부여(3점)
- 선정방법 :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 선정기준 / 규모 : 마을기업 4대요건기준으로 성과 평가, 10개 내외 선정
- 지원혜택 : 사업개발비 지원(최소 3천만원 ~ 최대 7천만원 / 자부담없음)
※ 전문교육(4시간) 이수 자율. 신청연도 전문교육 이수시 가점부여(3점)
- 선정시기 : 추후안내(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와 연계 추진)

2019년 서울시 마을기업 레벨업지원사업

해당 지원사업의 내용은 센터의 추가 사업기획 등에 따라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서울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별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실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서울시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업의 성장과 경영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서울 시 소재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
- 지원기간 : 2019년 6월 ~ 2019년 12월 (약 6개월)
- 지원규모 : 기관 별 최대 1천만원
- 지원내용

| | |
|------------|--|
| 지원내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시제품 개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콘텐츠 제작·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제품 및 서비스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홈페이지개발·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쇼핑몰 구축 개발비 (도메인비용 등 이용기간이 지원사업 기간을 넘는 경우 불가) |
| 지원불가 내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경영관련 감사비용 및 컨설팅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판촉물 제작비, 자산성 장비, 기자재 취득비- 자산성 장비, 기자재 취득비- 보험료, 세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교육훈련비- 지역 내 주민 대상 단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 |

□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는 마을기업의 경우 지원불가
- 신청기간 : 2019년 5월 중순(예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추진절차

-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센터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안)

|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
| 지원의 필요성 (40) | 기업 사업모델과 프로젝트의 연계성 | |
| |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 | |
| | 목표의 명확성 및 활동가 역할의 구체성 | |
| 사업계획의 적절성 (40) | 사업계획과 지원사업의 취지 부합 여부 |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
| | 기업 역량 및 준비 정도에 따른 실행가능성 | |
| 기대효과 (20) | 지원을 통한 사회적 효과 창출 및 기업 성장가능성 | |

2019년 서울시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해당 지원사업의 내용은 센터의 추가 사업기획 등에 따라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가능한 사업의 규모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참여와 관계망 확충을 통한 사업으로 기획하고 사업 주체를 선정,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서울시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이라 함은 마을기업이 대표조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 소재지내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생태계조성 사업단) 및 1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 지원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1월 (약 9개월)
- 지원규모 : 컨소시엄 별 최대 4천만원, 5개 기업 내외
- 지원분야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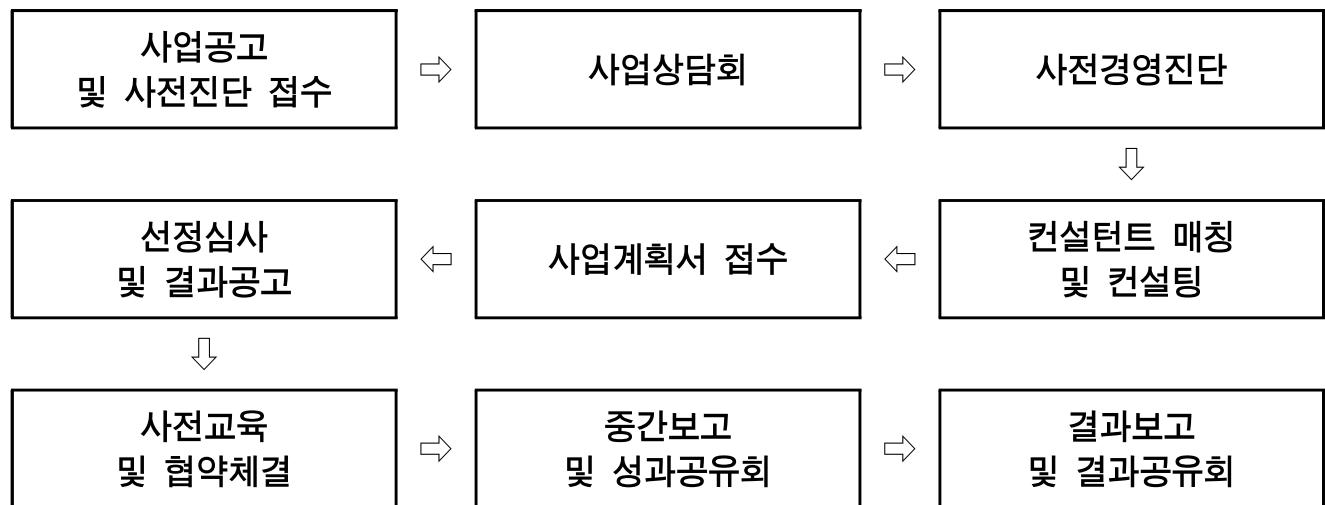
| | |
|------|--|
| 공통 | - 자치구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유통·공급 프로세스 등의 협업화 모델 |
| 기획주제 | - 지역돌봄, 혁신교육 및 마을방과후학교, 맞벌이자녀 대상 급·간식사업 등 |
| 자유주제 | - 특정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사업 디자인 및 수행 |

- 지원범위

| | |
|------|---|
| 지원가능 |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 지원불가 | -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

□ 추진절차



※ 상기 추진절차는 센터의 사정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안)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
|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 목표 및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와 전략의 적절성 ·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 | 20점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 설계 타당성 · 실현 가능성 | 20점 |
| |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기본방향 및 협력체계구축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10점 |
| 사업 추진 역량 (30) | 신청기관의 전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관 및 사업 총괄책임자의 관련 전문지식 정도 · 신청 기관의 인적 자원 역량 | 10점 |
| | 사업참여 의지 및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 | 10점 |
| | 협업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기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연계 역량 · 지역 자원 연계 역량 | 10점 |
| 기대효과 (20) | 사업성과 및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통한 마을관계망 확장 효과 ·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 | 20점 |

2019년 2월 19일(화) 마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Q. 19년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목표 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A. 올해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목표 수는 2개소 예정입니다.

Q. 예비마을기업 지정 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하면 가점이 있는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A. 2019년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에 의하면, 가점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18년 돌봄협업콘텐츠지원사업 참여 기업인데, 올해 공동기획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A. 동일 사업내용이라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추가개발 및 모델의 고도화 등과 같이 콘텐츠의 상향모델 구축 등이라면 검토 후 해당내용은 공고문에 담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레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본 업종 및 사업내용과는 다른 이종(異種)업종에 대한 개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A. 이종업종에 대한 사업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레벨업 지원사업의 취지인 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의 주제라면 가능합니다.

Q. 공동기획사업과 관련하여, 매뉴얼 제작 및 배포가 사업내용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A. 지원사업계획작성에 매뉴얼 제작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산(안) 작성에 추가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설립 전 교육과 관련하여, 조금 더 기업·참여자 친화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A. 2018년 2차년도 마을기업 대상 의무교육(4시간)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교육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기업별로 사업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장소 또한 기업의 사무실 또는 가급적 기업의 소재지를 벗어나지 않는 장소에서 4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2019년도 해당 내용과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이나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2차년도 의무교육의 경우 마을기업의 회원 5인 이상이 필수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Q. 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선정일정 및 교육일정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A. 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참여공모는 3월~4월 중 서울시 고시·공고 (<https://bit.ly/2E3fux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의무교육 안내 및 참가신청은 서울시 고시·공고 후 1~2일 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태계조성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전에 교육일정은 완료될 것입니다.

Q.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수를 더 확장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A.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답변) 서울시 예산 편성 상 올해는 어렵습니다.